

· 작성부서	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법규팀		
· 담 당 자	팀장 : 엄세용(☎051-662-2101)		
· 배 포 일	2005. 12. 26(월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1-4089)

※ 이 자료는 **12월 27일(조간)** 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

주요 내용

<p>“ 별첨참조 ”</p>

※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

2005. 12

증권선물거래소

1 증권산업의 건전성 강화

① 지배주주 사전승인제 도입 : 2006. 1. 30 시행

-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 능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 -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

※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완료 : 2005. 7. 29

2 스톡옵션 부여요건 강화 등 (증권거래법 개정)

▶ 2005. 12. 8 증권거래법 국회통과

※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시행 (2006년 상반기 예상)

① 증권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

- 금감위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임원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

② 자기주식 취득 개선

-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·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

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편의 도모

③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 강화

-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,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·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함

3 금융통합법 제정 추진

- ▶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, 선물거래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,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금융통합법 제정 추진 예정
- ※ 2006년 상반기중 국회입법을 목표

< 주요내용 >

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 허용

- 현재 엄격히 분리돼 있는 각 금융업의 겸업을 허용하여 증권, 선물, 자산운용, 신탁 등을 모두 겸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가능

②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

-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현재의 열거주의(포지티브 시스템)에서 포괄주의(네거티브 시스템)으로 변경하여 취급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

③ 간접투자펀드 형태 제한 폐지

- 현재는 수익증권 계약형태인 투자신탁,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(뮤추얼펀드),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합자형태의 PEF만 간접투자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나,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법상 의미명조합이나 투자조합 등의 펀드도 가능

4 통합 도산법 시행

< 시행시기 : 2006. 4. 1 >

①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

- 기존 「회사정리법」·「화의법」·「파산법」·「개인채무자회생법」을 폐지하고 1개의 법률로 통합 → 「채무자회생및파생에관한법률」

②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

-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되었던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

③ 국제도산절차의 신설

-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

④ 증권·선물 거래의 결제안정성 확보

- 증권선물시장의 참가자인 증권사, 선물사 등에게 도산절차(회생 및 파생절차)가 개시되더라도 이들이 이미 행한 증권선물거래에 대해서는 도산절차를 밟지 않고 청산결제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 증권선물시장의 결제안정성 보장

5 증권시장 매매제도 개선

①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(유가증권시장) : 시행 2006. 1. 2

-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도·매수 호가의 가격차이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·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

② 장중대량매매 허용 (코스닥시장) : 시행 2006. 4.24

- 투자자의 다양한 대량매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중대량매매 제도를 도입 (유가증권시장은 既도입)

6 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

□ 거래량요건 개선 : 시행 2006. 1 .2

- 거래량요건 산정주기의 확대(분기→반기) 및 거래 주식수 요건을 완화(10만주→2만주)하여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도모

*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, 5만주에서 1만주로 개선

7 증권시장 수시공시제도 개선

□ 수시공시 규정체제 합리화 : 시행 2006. 4. 1

-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기준으로 232개(코스닥은 227개)에서 134개(코스닥 135개)로 대폭 축소